

#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3. 8. 1.

통권 제96호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위탁가정과 아동을 위한 위탁부모 힘 키우기

### I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이 되어주는 가정위탁

지난 5월 22일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가정위탁의 날’로서, 올해 제20회를 맞이하였음.

가정위탁 보호는 원가정이 가족해체, 부모의 학대, 방임 등으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sup>1)</sup>,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며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sup>2)</sup>

- ▶ 가정위탁사업은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위탁가정 보호 유형을 규정하고 부모교육 우선 이수에 대해 요건화하였음.
- ▶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생계비 지원, 보험료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위탁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진학자금 지원 등이 있음.

가정위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위탁아동은 9,541명이며, 위탁가정 수는 7,830세대임.<sup>3)</sup>

- ▶ 위탁가정 7,830세대 중에서 일반(친인척)위탁이 88.5%, 일반(친인척 외)위탁은 9.9%이며, 2021년도부터 시행된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은 각각 0.8%, 0.4%임.
- ▶ 일반위탁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친인척위탁에는 14세 이상의 아동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에서는 그 유형 특성상 주로 어린 연령의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가정위탁은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아동과 연계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sup>4)</sup>

-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우선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에 비해 위탁가정의 수는 부족한 실정임.
- ▶ 위탁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친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므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담당하는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을 위한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배윤진·이정림·김아름·이혜민·양성은·장혜림·차우림, 2022)」에 기초하여 작성됨.

1)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일컬음(아동복지법 제3조).

2) 보건복지부(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1].

3)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2017). 2016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보고서.

-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의 개선점과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육아지침서를 소개하고, 육아지침서의 활용 및 위탁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II 위탁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개선의 필요성

### 현행 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sup>5)</sup>의 한계점

-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위탁부모 중 1명 이상(부 또는 모)은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반드시 5시간 이상,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20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표 1 참조).
- ▶ 위탁가정 선 책정 후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편의적인 가정위탁보호 책정은 금지됨.

〈표 1〉 가정위탁보호 유형 및 부모교육

	전문가정위탁보호	일반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
목적 (대상)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인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함,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함.	보호대상아동을 일시(3개월, 최대 6개월) 위탁하여 보호·양육함. 특히,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을 대상으로 함.
부모 교육	대상: 위탁부모 중 1명 이상 시간: 2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배우자는 최소 5시간 이상) 보수교육: 매년 5시간 이상 방법: 집합교육 원칙	대상: 위탁부모 중 1명 이상 시간: 5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보수교육: 매년 5시간 이상 방법: 집합교육 원칙이나 온라인 및 가정방문 교육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1].

5시간의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하기에는 부족함.

- ▶ 위탁부모 중 1인만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므로 위탁부와 모가 함께, 혹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양육에 참여함을 고려해볼 때 1인만의 교육은 부족함이 있음.
- ▶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위탁부모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안내서와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자료만이 개발되어 있음.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한다는 위탁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별로 필수 이수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의 개선 요구 및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위탁아동의 특성이나 위탁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모교육을 개선함으로써 위탁부모를 지원하여야 함.

- ▶ 위탁부모 28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sup>6)</sup>, 예비위탁부모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25.7%),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20.9%), 자녀양육 방법(16.4%),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12.3%) 등의 순이었으며, 보수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은 자녀양육 방법(28.3%),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21.0%),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움으로 유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을 꼽았음.

5) 보건복지부(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1].

6) 배윤진 외(2022)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부모는 ‘위탁보호 종료 후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음.

위탁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위탁부모교육에 있어 부모의 권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 위탁부모 보수교육의 경우 내용이나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매년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위탁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양육자에 의한 좀 더 세심한 이해와 양육을 필요로 함.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을 위탁부모 개인에게만 짐 지우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이 필요함.
- ▶ 위탁부모가 위탁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적·외적 자원의 부재는 아동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위탁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기에<sup>7)</sup>, 부모의 권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교육자료(육아지침서)의 필요성이 제기됨.

### III 육아지침서 개발 및 활용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위탁부모 힘 키우기(Parenting Guide Empowering Foster Parents)’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만나고 헤어지는 위탁의 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위탁부모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또한 위탁부모의 양육 방법과 기술 습득,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둔 기준 부모교육 자료에 더해서 위탁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위탁부모의 권리보장까지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였음.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는 긍정적 훈육과 강점 관점에 기초하여 나를 알아가기(자기 이해), 나를 만들어가기(양육 기술), 나를 세워가기(정체성)라는 내용 틀을 지님.

- ▶ 긍정적 훈육<sup>8)</sup>은 아동발달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접근법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이해에 근간함. 긍정적 훈육은 훈육의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아동에게 따뜻함과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 ▶ 강점 관점<sup>9)</sup>은 부모나 아동이 지난 문제와 병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관점임. 강점 관점에 따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신과 아동의 자원, 재능 및 성취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됨.

위탁부모와 아동의 만남과 적응, 그리고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4계절에 비유하여 육아지침서를 초기(봄) – 적응기(여름과 가을) – 종결기(겨울)로 구성함. 즉,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가정에 배치된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정체성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돋는 내용에서부터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아동을 이해하여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추후 아동이 성인이 되는 등의 이유로 위탁이 종결될 때의 대처까지를 그 내용으로 담음.

- ▶ 초기(봄): ‘위탁부모 되어가기’, ‘위탁아동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위탁부모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위탁아동의 특성을 알아가기 위한 내용을 담음.
- ▶ 적응기(여름과 가을):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넘어진 아동과 같이 일어서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아동 연령별 특징, 문제행동 및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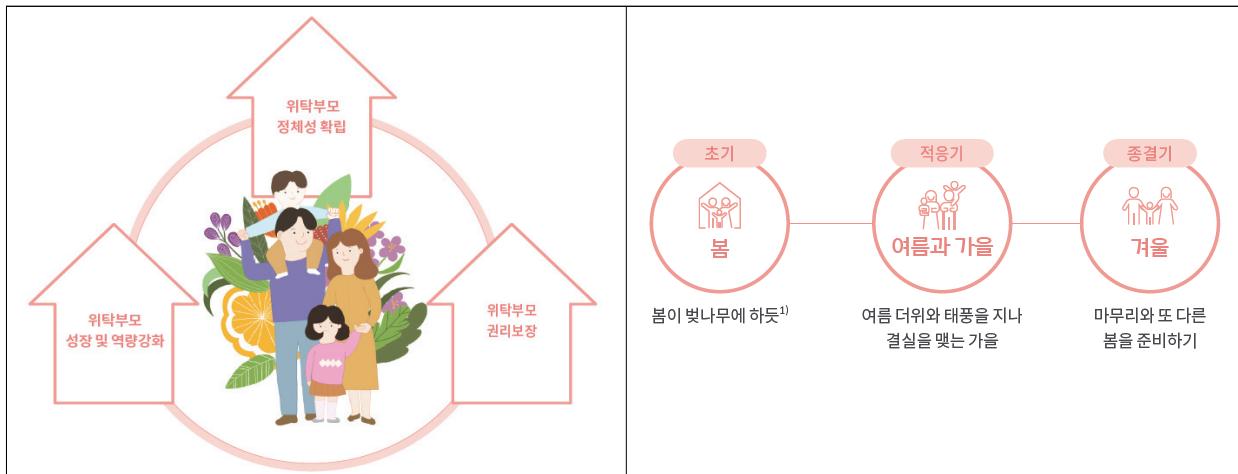
7) 장혜림·정익중·신지현·강현아·이화조(2021). 전문가정위탁 부모의 양육경험. *한국아동복지학*, 70(2), 133-166.

8) Durrant, J. E. (2016).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9) 김연수(2015). 청소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9, 7-37.

- ▶ 종결기(겨울): '헤어짐을 준비하기', '네가 날고 싶을 때를 위해'라는 주제로 종결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아동의 자립 지원 정보를 담음.

〈그림 1〉 육아지침서의 목적과 구성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p. 9, 11.

###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활용

- ▶ 육아지침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부모 보수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 위탁부모 대상 교육이나 집단상담 시 초기적응팀, 아동연령에 따라 영유아팀, 초등학령기팀, 청소년기팀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각 위탁부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육아지침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팀 구성 및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육아지침서의 목차에 따라 각 회기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담당자 혹은 전문가와 함께 다루어볼 수 있음.
- ▶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므로 위탁가정에 비치해두고, 양육 중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혹은 행동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볼 수 있음.

## IV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과 대상의 법제화 및 부모교육 체계 마련

위탁부모 양성교육의 내용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 먼저 법제화를 통해 위탁부모 양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추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부모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심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시가 필요함.
- ▶ 부모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 또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위탁부모 중 1인만 대상이 되지만, 그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부모교육 체계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 필수교육과 선택(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기를 제안함.

- ▶ 위탁 전인지(양성교육) 혹은 위탁 중인지(보수교육) 그 시기마다 필요한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위탁부모와 아동이 혈연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달라짐.

- ▶ 필수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필수교육과정은 모든 위탁부모가 이수하도록 하고, 선택교육과정은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아동의 특징이나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 부모교육이 강화된다면 교육시수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모두 맡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부모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체계임.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은 곧 위탁아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
- ▶ 위탁가정 사례관리를 통해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위탁부모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가정)에게는 집단상담, 심리치료, 자조모임, 가족여행(휴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 친인척(조부모) 위탁인 경우, 위탁부모의 연령이 높아서 최근의 양육 경험이 없거나 양육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 고민이나 필요로 하는 정보가 서로 다름.
- ▶ 따라서 아동의 연령, 성별, 위탁부모-아동 관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방법들이 다르게 마련된다면 양육역량 강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임.

공식적·비공식적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함.

- ▶ 자조모임에서 양육 사례를 들으며 위탁아동을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육정보나 육아물품을 교환하고 훈육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장이 되며, 서로 대화와 교제를 통해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음.
- ▶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위탁부모가 폐쇄적인 가정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이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조모임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 자조모임은 위탁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정체감 형성이나 정보 교류에 도움이 되므로 그 목적에 따라 아동을 포함하는 위탁가정 전체를 위한 모임도 기획될 필요가 있음.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지원이 필요함.

- ▶ 위탁가정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발달 자극이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안전해야 함.
- ▶ 가정환경 조사 시 아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비용 지원 이외에도 영유아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음.

배윤진 연구위원 byj@kicce.re.kr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바로가기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96호